

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

제정 2016. 1. 6. 조례 제2701호
일부개정 2024. 11. 5. 조례 제369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,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①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
2.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
3. 장애인, 노인, 다문화 가정,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
4.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1. 5.>

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)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, 예

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, 도서,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1. 5.>

1.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
2.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 및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
3.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
4. 백일장, 독후감 경진대회,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
5.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, 연구, 발표 등 학술행사
6.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
7.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④ 시장은 도서관 행사 참여자에게 제적된 정기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11. 5.>

제5조(독서의 달 운영) 시장은 「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운영한다.

[전문개정 2024. 11. 5.]

제6조(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)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,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독서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)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및 프로그램, 행사 참여자 중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안양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 11. 5.]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중전 제8조에서 이동 2024. 11. 5.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11. 5. 조례 제369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